

Customs Focus

이주의
초점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3길 33 (성수동 2가 6층)

contents



01
이주의 초점



02
관세 무역 NEWS



03
개정 법령



04
민원 사례



05
기타

contents



이주의 초점

1. 인니·이스라엘產 수입물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철폐·인하



관세·무역 NEWS

2. 해수부,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 운영 등 수출입·물류 지원에 총력

3. 수출입은행, 中企 수출자금 회수기간 단축 돕는다

4. 올 상반기 中企 수출 '역대 최고' 565억 달러 기록

5. 한·인니 CEPA 발효 대비 S/G 등 무역구제 제도 정비

6.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벌써 1년"

7. 中·인니·대만產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개정법령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9.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민원사례

10.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관련 질의

11. 리튬폴리머 축전지의 수입요건 관련 질의



기타 관세소식

12.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3. HS별 품명·규격 수입신고 가이드 배포

Cover

인니·이스라엘産 수입물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철폐·인하 - 1

이주의
초점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한·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내용 반영 ... 협정관세 신청절차도 손봐

인도네시아·이스라엘産 수입물품 총 2만 2,000여개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관세·무역
NEWS

정부는 7월 20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이번 개정에서는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협정관세 신청과 관련한 일반 절차 중 일부를 개선했다. 먼저 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産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동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민원
사례

긴급관세란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인나·이스라엘産 수입물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철폐·인하 - II

이주의
초점

또한 각 협정별로 1만 1,0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표를 동법 시행령 별표에 담았으며, 추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産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産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하도록 했고, 긴급 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협정관세 신청절차와 관련한 규정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관세·무역
NEWS

구체적으로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 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으며, 협정관세 신청 시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법령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7월 말 공포할 예정”이며, “협정관세 신청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FTA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양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로부터 60일 후)되는 때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이주의
초점

【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내용(상품 분야) 】

■ RCEP(+ 3.3%), 한·ASEAN FTA(+ 14.7%) 대비 시장접근 개선

- 전체 개방 수준 RCEP(韓 94.2%, 인니 91.5%)보다 우리나라는 1.6%p, 인니는 3.3%p만큼 추가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함.

- RCEP과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5.8%, 인니는 94.8%의 관세를 철폐함.

■ 양측 관세철폐 수준 현황(품목수 : HS 2017, 수입액 : 2017~2018년 평균)

국가	한·ASEAN FTA	RCEP		한·인니 CEPA*	
			한·ASEAN 대비		RCEP 대비
韓	(품목수) 90.2%	94.2%	+4.0%p	95.8%	+1.6%p
	(수입액) 93.6%	96.1%	+2.6%p	97.4%	+1.3%p
인니	(품목수) 80.1%	91.5%	+11.4%	94.8%	+3.3%p
	(수입액) 88.5%	92.1%	+3.6%p	97.6%	+5.4%p

* 인니가 특정 세부품목에 사용하는 면세제도의 효과까지 포함한 수치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 한·이스라엘 FTA 주요 내용(상품 분야) 】

■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함.

*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 우리나라 99.9%, 이스라엘 100%

- 우리나라는 對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자동차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로 이스라엘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함.

-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시장을 최대한 보호했음.

- 다만 반도체·전자·통신 분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관세를 3년 이내 철폐함.

* 총 수입액 중 비중(2020년) : 반도체 제조용 장비 17.6%, 전자응용기기 16.0%

■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1967년 이후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함.

*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등

Cover

해수부,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 운영 등 수출입·물류 지원에 총력 - I

7월, 국적선사 임시 선박 9척 투입 ... 중소 화주 및 농·수산물 지원 확대

이주의
초점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화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운영하고, 임시 선박 투입과 중소 화주 전용 선적 배정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출입·물류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고 7월 19일 밝혔다.

관세·무역
NEWS

먼저 이달 20일부터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를 운영해 수출 화주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부산항 신항 서측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배후단지 운영 착수 전까지 한시적(~2022.上, 잠정)으로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로 사용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

이번에 개장하는 면적은 약 7만㎡(2,450TEU 이상)로, 애초 계획했던 면적(4만㎡) 대비 75% 확대해 공급한다. 8월에는 4만㎡(1,400TEU 이상)를 추가 공급하고, 추후 필요시 최대 약 39만㎡(13,000TEU 이상)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 이용 관련 세부 사항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홈페이지(www.iel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사례

또 해수부는 웅동 배후단지 내 영구적인 장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3,000TEU 이상) 확보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지에 대해 지반 보강 공사 등을 거쳐 3단 화물 적재를 가능하도록 해서 이번에 개장하는 임시 보관장소보다 운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해수부,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 운영 등 수출입·물류 지원에 총력 - II

이주의
초점

한편 터미널 운영 개선 및 대체 장치장 운영, 임시 선박 투입 등으로 4월 이후 부산항 신항의 평균 장치율(터미널 내 화물이 보관된 비율)은 4월 83.0%에서 5월 82.1%, 6월 81.5%, 7월(1~19일) 80.8%로 나타나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8월 이후 총 45척, 12만 1,000TEU를 운송했던 임시 선박을 7월에는 최대 규모인 9회 투입하고, 이후에도 임시 선박 투입 횟수 및 항로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무역
NEWS

아울러 중소 화주에 대해 현재 주당 480TEU를 제공 중인 미주·유럽항로의 전용 선적 공간을 더욱 확대하고, 상품 저장 및 출하시기 조정이 곤란한 농·수산식품의 적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항로 임시 선박에 주당 66TEU를 우선 제공한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수출입은행, 中企 수출자금 회수기간 단축 돕는다 - I

이주의
초점

무서류 방식의 수출채권 매입 '디지털 공급망 금융' 실시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서류 방식의 '디지털 공급망 금융'으로 수출채권 매입에 나선다. 이는 우리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금융기관의 상생협력모델로, 신속한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세·무역
NEWS

'디지털 공급망 금융'이란 공급자(수출자), 구매자(수입자), 금융기관 간 글로벌 공급망 연계시스템(Supply Chain Management)을 통해 서류 없이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금융상품이다. 즉 은행이 거래당사자와 운송회사가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해 고객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실물거래를 신속히 확인한 후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정
법령

수출입은행은 7월 19일 국내 기업이 미국 유명 의류기업인 The Gap과 의류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채권을 Deutsche Bank에 매각하면 수출입은행이 이를 재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전 한도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공급망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원
사례

수출입은행은 Deutsche Bank가 수출채권 매입 시 우리나라 기업에 할인율을 인하하도록 하고, Deutsche Bank는 동 수출채권을 수은에 매각해 채권회수 위험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수출입은행, 中企 수출자금 회수기간 단축 돕는다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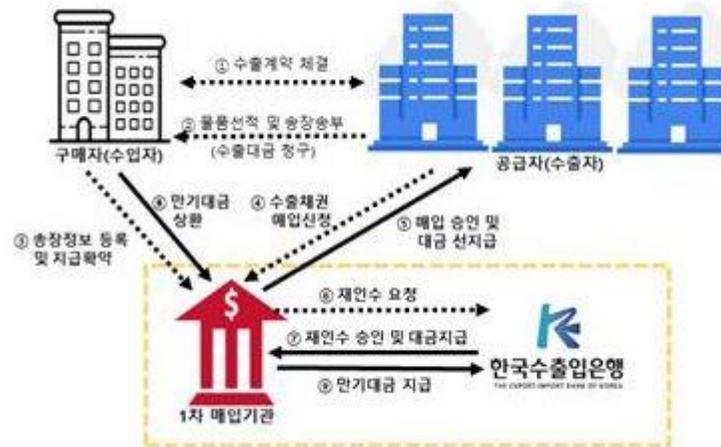
이주의
초점

수출입은행이 이러한 방식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출채권 매입을 통해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할인료 절감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공급망 금융은 우리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금융기관의 상생협력모델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기업의 실물서류 제출 없이 공급망 플랫폼에서 증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만큼 신속한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해 효율성과 거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세·무역
NEWS

【 디지털 공급망 금융 거래구조 】



※ 실선은 실제 자금흐름을 의미

출처 - CUSTRA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Cover

올 상반기 中企 수출 '역대 최고' 565억 달러 기록 - I

화장품·의약품·반도체 등 코로나19 시대 특징 반영된 품목 호조세

이주의
초점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5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100억 달러·21.5% 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관세·무역
NEWS

코로나19 극복 기대감에 따른 화장품, 신속진단키트 수요 급증에 따른 의약품,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반도체·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호조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7월 21일 발표한 2021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5% 증가한 565억 달러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코로나19 이전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이후 중소기업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68억 달러, 13.7% 증가했다.

개정
법령

특히 최근 3개월 연속 3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2분기 수출이 29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7% 증가하며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민원
사례

이번 통계에서 두드러진 점은 코로나19 시대 특징이 반영된 품목의 호조세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화장품, 진단키트, 반도체 등이 그 주인공이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올 상반기 中企 수출 '역대 최고' 565억 달러 기록 - II

이주의
초점

화장품은 27억 1,000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1% 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주요국(美·中·日)과 신흥국(베트남·러시아)으로 수출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항원·항체 검사 기반) 수출 확대에 따라 의약품 수출이 19억 8,000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4.9% 늘었고, 글로벌 전기차 보급 확대로 자동차부품 수출도 21억 2,000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1%로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수출도 크게 늘었다.

관세·무역
NEWS

【 수출액 추이(반기 기준, 억 달러) 】

【 수출액 증감률 추이(반기 기준, 전년 동기대비, %) 】



개정
법령

민원
사례

출처 - CUSTRA

기타
관세소식

Cover

한·인니 CEPA 발효 대비 S/G 등 무역구제 제도 정비 - I

이주의
초점

정부,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 11월로 예정된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 시기 발맞춰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제도를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내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

지난해 12월 18일 양국 정부가 한·인도네시아 CEPA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협정에 규정한 양자 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반영해 협정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
법령

먼저 FTA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했다. 참고로 WTO 협정문은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FTA 체결에 따른 양자 간 세이프가드는 당사국 간 합의 수준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추가해 규정한다.

민원
사례

또한 잠정 FTA 세이프가드 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입수방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20일 이상 의견 수렴기간 보장 대상 국가에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했다.

아울러 FTA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로 점진적인 조치 완화(자유화)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했으며, WTO 협정에 따른 다자(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의 재량적 적용 배제 대상국가에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했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한·인니 CEPA 발효 대비 S/G 등 무역구제 제도 정비 - II

이주의
초점

무역위원회 전문종 상임위원은 “이번 개정은 인도네시아産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무역구제 법령에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인도네시아 CEPA 개요 】

- ①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FTA와 유사한 협정으로, 양국 간 상품·인력 이동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
- 상품 : RCEP(+ 3.3%), 한·ASEAN FTA(+ 14.7%) 대비 시장접근 개선
 - 서비스 : 2.7억명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확대
 - 협력 : 체계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챕터 강화
- ② 인니는 세계인구 4위(2.7억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 경제성장, 2030년 세계 경제규모 4위 전망 (스탠다드차터드, 2018년)
- ③ 싱가포르(2006년 발효), 베트남(2015년 발효)에 이은 ASEAN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임.

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벌써 1년" - I

관세청, 1년간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검사비용 54억원 지원

이주의
초점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중소기업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그동안 약 54억원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비용 경감,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 차단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것이다.

개정
법령

지원대상 검사비용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이며,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민원
사례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올 6월 말 기준 2만 1,000여개 업체가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57% 증가했다(2020년 : 21억원 → 2021년 6월 : 33억원).

기타
관세소식

Cover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벌써 1년" - II

이주의
초점

한편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세관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02-2107-2533~34, 37~39)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는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 검사비용 지원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출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관세·무역
NEWS

이와 관련해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원대상 기업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올 하반기엔 검사비용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안내하는 등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해 세관검사를 받은 수출입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최대 25.82%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1

이주의
초점

제413차 무역위, 5년간 7.17~25.82%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5년간 최대 25.8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7월 22일 제413차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 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 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 미만을 차지한다.

지난해 9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5개월 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올 2월 18일 예비판정에서는 긍정판정 결과가 나왔으며, 예비덤핑률은 중국 49.4%, 인도네시아 29.68%, 대만 9.20~9.51%였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Cover

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최대 25.82%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 II

이주의
초점

올 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본조사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7월 22일 무역위에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최종판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역위는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 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조사한 결과,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조사대상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또 무역위는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수입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중소 수입·수요업계 및 해외 수출자를 중심으로 수급 애로 개선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요구가 있었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Cover

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최대 25.82%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 III

이주의
초점

이에 무역위는 중소 수요업계 부담 완화,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200계 강종(낮은 니켈 함량)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를 결정했으며,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에 대해 산업보호,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가격인상약속 제도란,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무역
NEWS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5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락한 것이다.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수출자는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령

무역위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2020.9.25.)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다.

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 조사 대상 물품 】

○ 품명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 두께가 8mm를 초과하는 제품과 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은 제외함.

○ 용도 : 자동차, 조선,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등 산업용 기계 부품, 건축내·외장재, 식기·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 폭넓게 사용됨.

○ 분류(HSK) : 제7219.12-1010호, 제7219.12-1090호, 제7219.12-9000호 등 48개

[대통령령 제31906호, 2021. 7.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Cove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II

이주의
초점

□ 주요내용

가.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제2조제19항·제20항,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 신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관세·무역
NEWS

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 연장(제3조제1항)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할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함.

개정
법령

다.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제4조제6항 및 제5조제5항 신설)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협정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입한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한 것인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민원
사례

출처 - 법제처

기타
관세소식

Cove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III

이주의
초점

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제21조제20항·제21항,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제12호·제13호 신설,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

-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2)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기간 등을 정함.
- 3)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물품에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추가함.
- 4)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

마.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 및 제34조제2항)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또는 인도네시아·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민원
사례

출처 - 법제처

기타
관세소식

Cover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식품 등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임.

관세·무역
NEWS

이에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
법령

또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민원
사례

출처 - 법제처

기타
관세소식

Cover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해외로 무상임대됐던 물품이 2년이 지나 다시 들어오는 경우 재수입 감면이 적용되나요?

□ (답변)

∴ 문의한 사례는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무역
NEWS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 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 경과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법령

민원
사례

∴ 다만 「관세법」 제99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즉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또는 '해외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제1호의 경우와 같은 재수입기간(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이지만 사용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 CUSTRA

기타
관세소식

Cover

리튬폴리머 축전지의 수입요건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유·무상 물품을 혼재해 선적하는 경우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 수입물품의 요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리튬 폴리머 축전지는 제8507.60-1000호에 분류되며,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안전 확인 신고를 한 후 수입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수입요건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메뉴 > [사업자] 메뉴 클릭 > [세계 HS 정보] 클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 일반 검색 사이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 검색해 사이트로 들어간 후 ② 상단 메뉴에서 [세계 HS] - 왼쪽 메뉴 [HS 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를 입력하면 수입요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관에서는 개별 법령 등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추천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해 그러한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 각각의 요건 구비 절차 및 비용, 대상의 범위 등은 개별 법령을 소관 하는 요건 확인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I

이주의
초점

미 상원은 최근 기술굴기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기술, 과학, 연구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인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하원에서 검토 절차가 진행중이다. 실제 중국은 2019년부터 소위 화웨이 수출통제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물자 공급제한 등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자, 올해 초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통해 '혁신이 이끄는 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및 기술 자립화를 천명했다. 또한 중국은 최근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7.1)에서도 '기술의 자립자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정책 수립을 위해 미국혁신경쟁법을 법적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다.

관세·무역
NEWS

미국혁신경쟁법은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된다. 세부 법안 중 우선 '무한 프론티어 법'과 '반도체 및 통신법'은 전체 패키지 법안에서 언급된 예산 중 대부분을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이공계 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역량 확대와 중국과의 격차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기술연구를 지원하는 국립과학재단(NSF)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
법령

'전략적 경쟁법'과 '중국도전 대응법'은 직접적으로 중국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중국의 위협에 대비할 국제협력 강화, 인권탄압이나 지재권 침해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부과, 미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을 통해 미국의 자금이 중국 국유기업 및 정부, 군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시행이 핵심이다. 특히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권탄압에 악용될 만한 품목의 수출통제 및 지재권 탈취로 생산된 중국산 제품의 수입금지를 동맹국과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
사례

출처-KITA통상보고서

기타
관세소식

Cover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II

이주의
초점

'2021년 무역법' 및 '미국의 미래 수호법'은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를 전제로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등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과 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를 꾀하는 법안이다. 미 수입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말 중단된 일반특혜관세(GSP) 제도와 수입관세임시철폐제도(MTB)를 재개하며, 301조 대중국 추가관세 면제신청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경기부양과 산업 입지 강화를 위한 국내 인프라 건설 및 조달시장에서 미국산의 구매의무를 확대하는 Buy American 규정의 강화를 법제화했다.

관세·무역
NEWS

연방정부의 권한 비대화 등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 산업계와 학계는 대체로 동 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하원에서도 동 법안과 유사한 취지의 중국 제재 패키지 법안이 입법과정을 밟고 있어, 향후 상-하원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중복·상치되는 내용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법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하원간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내 입법완료 여부는 불확실하다.

개정
법령

동 법은 향후 5년간 중국의 지재권 침해, 인권탄압, 국유기업 우대 등 다양한 통상이슈에 대해 매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안별로 '미국의 조사-대중국 조치-중국의 반발(및 조치)-긴장 격화-새로운 이슈로 확장'의 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이 최종 발효될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동 법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게 대중국 공동 수출통제 및 수입금지 등 통상분야에서 대중국 견제의 전열에 동참할 것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하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KITA통상보고서

Cover

HS별 품명·규격 수입신고 가이드 배포

이주의
초점

1.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HSK기준 700개 품목에 대한 HS별 「수입신고 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올해에는 기존 배포분 정비 및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배포하오니 「수입신고 가이드」를 적극 활용(준수)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세·무역
NEWS

가. 수입신고 가이드<첨부1> 배포사항

○ (기존) HSK 700개 (107개 삭제, 1,507개 추가) → (배포) HSK 2,100개

☞ 온라인 조회사이트

-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관세청(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나. 협조 요청사항

개정
법령

- 신고 가이드는 민·관 협력차원에서 상세한 신고요령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과정에서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 신고 가이드 중 <첨부2>의 필수사항 미신고시 '21.9월부터 신고 접수 후 예상오류 통보서를 제공하오니, 통보된 내용을 확인 후 자발적 정정* 등 협조요청

* 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코드 39)로 정정시 정정시기와 관계없이 오류접수면제

민원
사례

- 신고 가이드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상시제출* 가능

* 제출처 : 100746ok@korea.kr (통관물류정책과, 신고 정확도 담당)

※ 문의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47)

- 신고가이드 첨부파일 확인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내 공지사항 확인기타
관세소식

Customs Focus

JOYANG
CUSTOMS
SERVICE CORP.



※ 자료 출처 : 관세무역정보,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등

